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, 벌칙 수준을 ‘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’에서 ‘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’으로 상향함(안 제21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최 기 도)